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2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489,700,000	14,691,000
일 반 회 계	482,300,000	14,469,000
일 반 회 계	482,300,000	14,469,000
특 별 회 계	7,400,000	222,000
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796,000	23,880
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	308,000	9,240
기 반 시 설 사 업 특 별 회 계	34,000	1,020
주 차 장 특 별 회 계	6,262,000	187,8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”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,385,40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